

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
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9 월 23 일

여 수 시 장

서예호



여수시 조례 제2302호

붙임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,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12월15일”을 “11월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의원연구단체의 구성) ① (생 략) ② <u>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 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.</u>	제3조(의원연구단체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,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.</u>
제4조(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<u>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 에 관한 총괄사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.</u>	제4조(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</u>
제6조(연구활동 기간) ① 연구단 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승인일로부터 같은 해 <u>12월 15일까지</u> 로 한다. 다만,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 피하다고 인정될 경우,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운영 심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연 장 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제6조(연구활동 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 <u>11월 30일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② (현행과 같음)